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지출 수준이 OECD 34개국 중 32위에 그치는 등 아동복지가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폭 넓게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며
- 나. 최근 아동학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악화되는 현실속에서 현행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체계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가. 제명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안 제명)
- 나. 조례의 목적을 아동복지 전반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2조)
- 라.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안 제3조)
- 마.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종합센터 등을 설치·운영함.(안 제5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bkim8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며,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8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 정책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 조사

제3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① 시장은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입소 및 퇴소 조치 등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시장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둘 이상의 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군·구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군수·구청장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요보호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 상담, 교육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신설>	<u>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며,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 정책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제3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① 시장은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입소
및 퇴소 조치 등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
동 보호에 필요한 정책에 관
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
업

제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시장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
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
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
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둘 이상의 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군·구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군수

<신설>

· 구청장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요보호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 상담, 교육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1. ~ 5. (생략) <신설> 6. ~ 7. (생략)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 제12조 (생략)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 ① 법 ----- ----- ----- -----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7. ~ 8. (현행 6. ~ 7.과 같음) 9. ----- ----- 시장 ----- ----- 제7조 ~ 제16조 (현행 제3조 ~ 제12조와 같음)
---	--

[별첨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제4조, 제12조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제3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나. 제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다. 제5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 운영
- 아동양육시설 9개소, 일시보호 1개소 567명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1개소 22명 지원
-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 운영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비용발생요인	예산액	비고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828	
- 아동돌봄서비스	10,043	
- 아동복지시설 지원	14,140	
합 계	25,011	

※ 제216회 임시회 업무보고 기준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15년)	2차년도 (‘16년)	3차년도 (‘17년)	4차년도 (‘18년)	5차년도 (‘19년)	계
세입	해당없음						
	소계						
세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828	828	828	828	828	4,140
	아동돌봄서비스	10,043	10,043	10,043	10,043	10,043	50,215
	아동복지시설 지원	14,140	14,140	14,140	14,140	14,140	70,700
	소계	25,011	25,011	25,011	25,011	25,011	125,055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25,011	25,011	25,011	25,011	25,011	125,055
	일반회계	25,011	25,011	25,011	25,011	25,011	125,055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